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2028년 공공자가망·와이파이 통합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성남시청(스마트도시과)**
○ 제조사·공급사: **(주)오파스넷**
○ 대상장비: **백본스위치(Nexus9508, Nexus9504, C9407R)**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2028년 공공자가망·와이파이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259,230,000원(부가세포함)** 이내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주기관명 **성남시장** (인)

제조사·공급사명 **(주)오파스넷**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2028년 공공자가망·와이파이 통합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성남시청(스마트도시과)**
○ 제조사·공급사: **(주)엠젠솔루션**
○ 대상장비: **광다중화장비(ExT-3848XG, ExT-3824XG, ExT-D400G, ExT-CT6400E, ExT-R800PE+, ExT-R800, ExT-CT6400E, ExT-CT800, XN1000, ExT-R400, ExT-R500N, ExT-R800P, SMC-S408B, ExT-R800GPE+, ExT-R800P+,XN350)**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2028년 공공자가망·와이파이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507,986,000원(부가세포함)** 이내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주기관명 **성남시장** (인)

제조사·공급사명 **(주)엠젠솔루션**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2028년 공공자가망·와이파이 통합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성남시청(스마트도시과)**
○ 제조사·공급사: ㈜티아이트리
○ 대상장비: **광다중화장치(BBS-4000, GE_PON ONU)**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2028년 공공자가망·와이파이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134,400,000원(부가세포함) 이내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주기관명 **성남시장** (인)

제조사·공급사명 **(주)티아이트리**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2028년 공공자가망·와이파이 통합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성남시청(스마트도시과)**
○ 제조사·공급사: **(주)태산이에이지**
○ 대상장비: **TS-WAP 2.0 2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2028년 공공자가망·와이파이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4,923,000원(부가세포함) 이내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주기관명 **성남시장** (인)

제조사·공급사명 **(주)태산이에이지**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2028년 공공자가망·와이파이 통합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성남시청(스마트도시과)
○ 제조사·공급사: ㈜시큐아이
○ 대상장비: MGF 2100B 2식, NGF 300 1식, NGF 100 5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2028년 공공자가망·와이파이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10,196,000원(부가세포함) 이내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주기관명 **성남시장** (인)

제조사·공급사명 **㈜시큐아이**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2028년 공공자가망・와이파이 통합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성남시청(스마트도시과)**
○ 제조사·공급사: **(주)소만사**
○ 대상장비: **Webkeeper 1식(NF1000 1대, BG500 1대 등)**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2028년 공공자가망・와이파이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 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 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 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10,000,000원(부가세포함) 이내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 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 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주기관명 **성남시장** (인)

제조사·공급사명 **(주)소만사**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2028년 공공자가망·와이파이 통합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성남시청(스마트도시과)**
○ 제조사·공급사: **엔트로링크(주)**
○ 대상장비: **PPX-AnyLink8000 2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2028년 공공자가망·와이파이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5,244,000원(부가세포함)** 이내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주기관명 **성남시장** (인)

제조사·공급사명 **엔트로링크(주)**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2028년 공공자가망·와이파이 통합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성남시청(스마트도시과)**
○ 제조사·공급사: **(주)쏘우웨이브**
○ 대상장비: **SAW-AC100 2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2028년 공공자가망·와이파이 통합유지관리 용역**) 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 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 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 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2,000,000원(부가세포함)** 이내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 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 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주기관명 **성남시장** (인)

제조사·공급사명 **(주)쏘우웨이브** (인)